

1. 개정이유
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835호, 2025. 3. 25. 공포, 2025. 9. 26. 시행)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등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전승교육사 추천권한 조항 정비(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불합하도록 정비(안 제17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전승교육사의 추천)”을 “(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추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승교육사의”를 “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”로 하며,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보유자 또는 보유단체”를 각각 “보유단체”로 한다.

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유단체”를 “보유단체, 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전승교육사의 추천) ① 국		제9조(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추		
가유산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		천) ① ----- 보유단체 전승교육		
정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보		사의 ----- 보		
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		유단체-----		
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		-----		
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		-----		
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.		-----.		
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		② ----- 보유단체-----		
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		-----		
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		-----		
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		-----		
상을 추천해야 한다. 다만, 국가		-----.		
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		-----		
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		-----		
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		-----		
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		-----		
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	-----.		
제17조의2(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		제17조의2(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		
차)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		차) -----		
무형유산 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		----- 보유단체, 전		
법 제30조에 따른 전승교육학교		승교육사 -----		
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		-----		
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		-----		
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		-----		

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략)	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